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도자료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2014년 2월 27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제품안전정책과 전민영 과장(02-507-7434), 안드레 사무관(02-509-7238),
안전행정부 안전정책과 이광태 주무관

제품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감시가 강화된다!

- 국가기술표준원, 「제2차 제품안전 종합계획(`14~`16)」 발표 -

□ 앞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품목에 대한 리콜 등 **시장감시는 강화**되고, **사전인증 규제수준**은 단계적으로 **완화**될 전망임

○ 국가기술표준원은 2.27(목) 이러한 정책방향을 담은 향후 3년간의 **『제2차 제품안전 종합계획('14~'16)』**을 수립하여 발표하였음

○ 동 계획은 안행부 등 안전관련 정부부처가 참석한 **'안전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하여 보고되었음

□ 금번 종합계획의 핵심은 **'기업의 자율적 책임 강화'**라는 정책을 유지하는 동시에 온라인 유통시장 발전 등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위해제품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임

□ 국표원은 종합계획에서 제품사고 최소화를 목표로 **4대 전략, 14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함

< 4대 전략 및 14대 중점 추진과제 >

추진 전략	중점 추진과제
시장감시 강 화	① 20대 안전취약품목 선정 및 중점 관리 ② 리콜처분 확대 및 이행률 제고 ③ 온라인시장 감시 강화 ④ 사고정보 기반의 안전관리체계 확립
제품안전관리 제도 선진화	① 사전인증 품목 단계적 완화 ②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③ 안전기준 제·개정 시스템 개선
제품안전 3개 법률 정비	① 제품 소관영역 명확화 ② 사업자의 안전사고 발생시 보고 의무화 ③ 온라인 유통제품의 관리근거 확보 ④ 리콜 행정주체 재정립
소통·협력 증 진	① 정부·사업자·소비자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② 사업자·소비자의 안전의식 제고 ③ 국제협력 확대

○ 우선, 위해제품 유통 차단을 위해 제품결함 등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고 안전기준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조치를 강화**할 계획임

- 안전성 조사 결과 위반율이 높은 품목이나 리콜 상위 품목 등 **20개 품목***을 선정하여 특히 **집중관리**하기로 하였음

* 완구, 아동용 섬유제품, 전기찜질기, 재생타이어 등 20개 품목

- **온라인 시장**을 통해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통신판매 중개자**(옥션, 11번가 등)에 대해서도 **인증 받지 않은 제품 판매 시 처벌근거를 신설**하기로 하였음

○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사전인증 규제수준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신제품 출시 시 기업 스스로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인한 제품이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제품군별 공통안전기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함

*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안전품질표시) 대상 품목비율을 현 행 2:4:4에서 2016년까지 1:3:6으로 완화

* (예) 중금속 함유량, 주의사항 표시 등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제품이 꼭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안전요구사항

○ 또한 환경부, 식약처 등 **부처 협업을 활성화**하여 **안전관리품목의 중복 조정* 및 안전기준 조화**** 등을 도모하기로 함

* 화학물질 관리가 필요하였으나 그간 국표원에서 관리하던 공산품 8개 품목(세정제, 방향제 등)을 '15년부터 환경부로 관리 이관

** 물티슈 안전기준을 식약처에서 운용하는 화장품 관리수준으로 강화

○ 국표원은 위와 같은 내용의 제도화를 위해 금년 중 제품안전기본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등 **제품안전 관련 3개 법률을 정비**할 계획임

□ 국가기술표준원 성시헌 원장은 "2차 제품안전 종합계획을 시행하여 **위해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사회전반에 **자발적인 제품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안드레 사무관(☎ 02-509-723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2차 제품안전 종합계획(요약)**

1. 그간의 정책방향 및 제품사고 동향

□ 그간의 정책방향

○ '00년대 이후 **소비자 안전**을 목적으로 現 **사전 인증제도 중심**으로 제도 설계

* '00년 전기용품 대상 안전인증제도 도입, '06년 공산품 대상 현행 안전관리제도 구축

○ '11년 제품안전기본법을 시행하면서 리콜조치 등 **시장감시 중심의 정책 도입**

* 리콜실적(명령·권고) : ('11) 105건 ⇒ ('12) 157건 ⇒ ('13) 209건

- 150명의 소비자단체 안전감시원을 활용하여 전국 판매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문구점을 집중 감시한 결과 어린이용품 관련 불법제품이 대폭 감소되는 성과를 거둠

* 문구점, KC미표시 제품 적발건수가 ('10년) 33,390건 ► ('12년) 8,798건으로 74% 감소

□ 최근 제품사고 동향

○ 최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및 다양한 신제품 출시로 안전한 **제품으로 인한 위해 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사고 신고건수 중 국가기술표준원 소관품목인 공산품, 전기용품을 선별한 자료임

○ 중국·베트남 등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 확대 및 온라인 쇼핑몰 등 유통시장 다변화로 **불법·불량제품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국내외 리콜 동향에서 완구, 아동용 섬유제품 등 어린이제품이 상위품목을 차지하고 있어 **안전취약계층 관련 사고증가가 우려됨**

2. 2차 종합계획 주요과제

□ 금번 수립된 종합계획에서는 **'기업의 자율적 책임 강화'**라는 정책을 유지하는 동시에 온라인 유통시장 발전 등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위해제품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시장감시 기능 강화, 제품안전관리 제도 선진화, 제품안전 3개 법률* 정비, 소통·협력 증진** 등 **4대 전략**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14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음

* 제품안전기본법(이하 기본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1 시장감시 기능 강화

○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20대 안전취약품목**을 선정하여 안전성조사, 시장모니터링을 통해 집중관리하고, 안전성조사 부적합률, 리콜실적 등을 토대로 관리대상 품목을 재평가하여 업데이트 관리할 예정임

중점관리 대상 품목

공산품	전기용품
완구, 아동용 섬유제품,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재생타이어, 생활화학 가정용품,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스포츠용 구명복, 접착제, 물티슈(10개 품목)	전기찜질기, 전기온수매트, 직류전원장치, 멀티콘센트, 형광등용 안정기, 전기방석, 전기스토브, 형광등기구, LED등기구, 백열등등기구(10개 품목)

○ 기본법 시행 이후 지난 3년간 기업계도 차원에서 취했던 **자발적 개선 조치를 축소**하고 **리콜 조치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리콜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불이행 기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언론 공표 등 후속조치를 강화**할 것임

- 또한, 리콜된 제품의 신속한 유통차단 및 회수를 위해 **제품이력 추적 시스템*의 구축을 검토**할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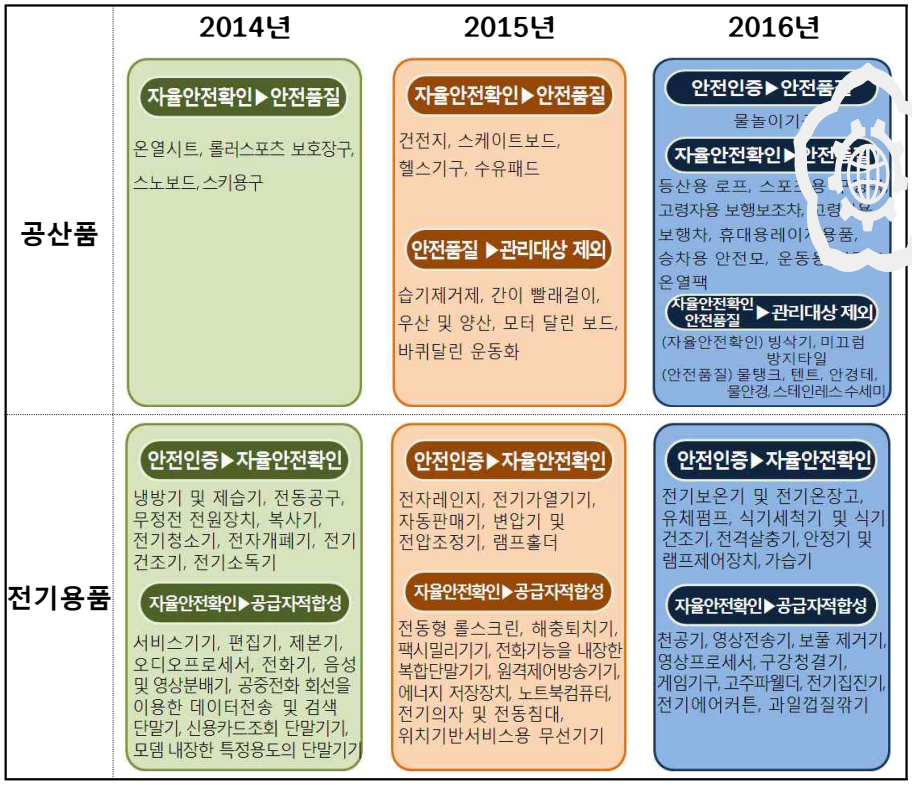
* 제품 생산·유통·판매 단계별로 정보를 수집하여 제품명, 기업명, 지역별 검색을 통해 제조사, 출고현황, 인증일시, 검사항목, 리콜이력 등을 확인 가능

○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행정구현을 위해 **사고정보에 기반한 선진형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근래 불법·불량제품 유통망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온라인 시장**에 대해서 **안전성조사 확대 및 유통업계와의 전산 시스템 연계**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정보수집·관리 → 제품사고조사·원인분석 → 제품위험성평가 → 리콜조치 및 안전기준 개발 지원

2 제품안전관리 제도 선진화

○ 현행 인증품목에 대해, **저위험 제품이 과도한 안전성 검증절차를 적용**하고 있는지를 재평가하여 **3개년에 걸쳐 인증품목을 재조정할** 계획이며, 조정품목에 대해선 **사전 공지할 예정임**



※ 제품사고 정보, 시장감시 결과를 고려하여 변동 가능성 있음

○ 신제품이 적시에 안전관리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전기용품의 품목 체계를 재분류**하고, **최소한의 안전기준 부과방식*을 도입**하며,

* 모터 사용, 고전압 또는 대전력 사용 등 특정요건을 반영한 안전기준 부과

○ 모든 어린이제품*에 대해 중금속(납,카드뮴,니켈), 가소제 등 **안전기준**을 **공통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여 **포괄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고자 함**

* 어린이제품 :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제품

3 제품안전 3개 법률 정비

○ 지난 3년간 제품안전관리 제도 운영에 있어 **혼돈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온라인 쇼핑몰 급성장 등 **제품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 관련 법률을 보완할 계획임

○ **사업자**가 제품관련 **안전사고 발생 시에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통신판매 중개자**가 **인증 받지 않은 제품 판매 시 처벌근거를 신설**하는 등 법률을 정비하고자 함

4 소통·협력 증진

○ **지자체, 소비자단체** 등과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부처별 상이한 안전관리수준에 대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생활제품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협업을 강화하고자 함

< 안전관리품목 협의사례 : 공산품 8개 품목 "환경부" 업무이관 추진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품공법에 따라 국표원이 관리하던 8개 품목*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15년부터 환경부로 이관

*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총 8개)

○ 제품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이는 방편으로 **사업자**에게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및 경영평가 기법**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계절별 사고 다발품목에 대한 주의사항** 등을 전파해 나갈 계획임